

## 가입 시 알아두실 사항

### 1. 청약 시에는 보험계약의 기본사항을 확인

보험계약 청약 시 보험상품명, 보험기간, 보험료, 보험료납입기간, 피보험자 등을 확인하시고, 보험약관을 반드시 수령·설명 받으시기 바라며 보험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.

### 2. 보험계약자의 자필서명

청약서는 보험계약자 본인이 작성하고 서명란에도 보험계약자 본인 및 피보험자가 자필서명을 하셔야 합니다. 자필서명을 하지 않으신 경우 보험계약의 효력 등과 관련하여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.

### 3. 가입자의 계약 전 알릴의무

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 청약 시 청약서의 기재사항 및 질문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내용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하며, 그렇지 않은 경우 보험금의 지급이 거절되거나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.

### 4. 가입자의 계약 후 알릴의무

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을 맺은 후 위험증가 및 주소변경, 목적물의 정보 변경 등 보험약관에 정한 계약 후 알릴 의무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지체 없이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. 그렇지 않을 경우 보험금의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.

### 5. 청약의 철회

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청약한 날부터 30일이 초과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.

### 6. 품질보증제도

보험계약 청약 시 약관과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전달받지 못하였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 받지 못한 때 또는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. 이 경우 이미 납입한 보험료에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해 이 계약의 보험계약 대출 이율로 계산한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여 드립니다.

### 7. 계약해지 후 다른 보험 계약 시 유의사항

보험계약자가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험 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,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
### 8. 해지환급금 관련

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없는 사유에 의한 경우 : 무효인 경우에는 회사에 납입한 보험료의 전액, 효력상실 또는 해지의 경우에는 해당 월 미경과비용에 따라 계산한 환급보험료  
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한 경우 : 위에서 계산한 해당 월 미경과비용에 따른 환급보험료. 다만 계약자,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무효가 된때는 보험료 환급 없음

### 9. 다수계약의 비례보상에 관한 사항

실손의료비, 배상책임관련 보장 등 해당담보를 보장하는 다수의 보험계약이 체결되어있는 경우 약관내용에 따라 비례보상됩니다.

### 10. 예금자보호 안내

-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,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(또는 만기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)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"최고 5천만원"이며,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. 다만,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.
- 위 내용은 예금자보호법 및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, 자세한 내용은 영업점에 비치된 예금자보호 안내책자 등을 참고하거나 예금보험공사(☎ 1588-0037, www.kdic.or.kr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### 11. 모집질서 확립 및 신고센터 안내

보험계약 체결과 관련된 특별이익 제공행위 등 보험질서 문란행위는 보험업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.

### 12. 보험상담 및 분쟁의 해결에 관한 사항

가입하신 보험에 관하여 상담이 필요하거나 불만사항이 있을 때에는 먼저 저희 회사(☎:1644-9000 / 홈페이지:www.nhfire.co.kr → 전자민원접수)로 연락 주시면 신속히 해결해 드리겠습니다. 또한, 저희 회사의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으시면 금융감독원 민원상담전화 ☎:국번 없이 1332, 홈페이지:www.fss.or.kr에 민원 또는 분쟁조정 등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.

### 13. 금융감독원 보험범죄 신고센터 안내

- 보험범죄는 형법 제347조(사기)에 의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, 보험범죄를 교사한 경우에도 동일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.
- 금융감독원 보험조사실 : ☎ 1588-3311
- 홈페이지(www.fss.or.kr)내 인터넷보험범죄사고

준법심의필 202004-089호 (유효기간 : 1년 또는 개정 시까지)  
 제작 농업보험지원팀(2020.4)

## 안내사항

전화번호 NH농협손해보험 Tel 1644-8900

홈페이지 www.nhfire.co.kr >>> 보험상품 >>> 농작물재해보험

※ 본 안내장은 상품의 주요내용을 발췌한 것으로서 구체적인 사항은 보험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
## 보험료 지원

정부지원을  
**50~60%**

지자체지원을  
**15~40%**

# 농작물재해보험

# 벼

## 조사료용 벼 포함

**가입기간** 2020.5.11. ~ 6.26.

**보상재해** 주계약 | 자연재해, 조수해, 화재

**특 약** 병해충 ※조사료용 벼 제외

\*흰잎마름병, 벼멸규, 도열병,  
 줄무늬잎마름병, 깨씨무늬병,  
 먹노린재, 세균성벼알마름병

**가입지역** 전 국

※ 지방자치단체 지원은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.

※ 보험금 지급 시 약관에 따라 피해율에서 자기부담금비율을 차감하여 지급합니다.

# 가입내용



- 품 목** 벼 (조사료용 벼 포함)  
※ 발벼(농림나1호, 상남발벼)를 제외한 전 품종 가입 가능
- 가입기간** 2020. 5. 11. ~ 6. 26.
- 가입지역** 전 국
- 가입기준** 농지당 가입금액 50만원 이상인 농지  
※ 조사료용 벼는 1,000㎡ 이상인 농지

**자기부담 비율**

**10%형, 15%형, 20%형, 30%형, 40%형**

10%형 : 3년 연속 가입 및 3년간 수령보험금이 순보험료의 50% 미만  
15%형 : 2년 연속 가입 및 2년간 수령보험금이 순보험료의 100% 미만  
20%형, 30%형, 40%형 : 임의 선택 가능

※ 간척농지의 경우, 자기부담비율 10%형, 15%형은 가입이 제한됨  
※ 자기부담비율 이내에 해당하는 피해율은 보상에서 제외됨

자기부담비율에 따른 정부지원보험료 차등지원			
자기부담비율	10%형, 15%형, 20%형	30%형	40%형
정부지원비율	순보험료의 50%	순보험료의 55%	순보험료의 60%

**납입방법** 일시납 [신용카드 납부가능(NH, KB, 신한, 롯데, BC, 삼성, 하나)]

# 보상하는 손해

구 분	보상하는 재해
주계약	자연재해, 조수(鳥獸)해, 화재
특 약	병해충 (흰잎마름병, 줄무늬잎마름병, 벼멸구, 도열병, 깨씨무늬병, 먹노린재, 세균성벼알마름병) ※ 병해충 최대 인정피해율 : 70%

※ 조사료용 벼는 자연재해, 조수해, 화재만 보상

# 보험금

## • 이앙·직파불능, 재이앙·재직파보험금

구 분	이앙·직파불능보험금	재이앙·재직파보험금
지급사유	보상하는 손해로 이앙·직파하지 못하게 된 경우	보상하는 손해로 면적피해율이 10% 초과하고, 재이앙(재직파)를 한 경우 ※ 농지당 1회에 한하여 지급
보험금 산정	보험가입금액의 10%	보험가입금액의 25% × 면적피해율

※ 이앙·직파불능보장을 받기 위해선 5월 15일(금)까지 가입해야 함  
※ 재이앙·재직파로 인한 면적피해율 80%이상 시 보험가입금액 변경됨

## • 경작불능보험금, 수확불능보험금

구 분	경작불능보험금	수확불능보험금	
지급사유	식물체 피해율이 65%이상인 경우 산지 폐기 등의 방법을 통해 다시 유통되지 않을 것을 확인한 후 계약자의 신청으로 보험금 지급	제한율이 65%미만으로 정상 벼로써 출하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 산지폐기 등의 방법을 통해 다시 유통되지 않게 된 것을 확인한 후 보험금 지급	
보험금 산정	자기부담비율에 따른 보험금 지급		
	자기부담비율	경작불능보험금	수확불능보험금
	10%	보험가입금액 × 45%	보험가입금액 × 60%
	15%	보험가입금액 × 42%	보험가입금액 × 57%
	20%	보험가입금액 × 40%	보험가입금액 × 55%
	30%	보험가입금액 × 35%	보험가입금액 × 50%
40%	보험가입금액 × 30%	보험가입금액 × 45%	

※ 경작불능 또는 수확불능 보험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해당 농지의 계약은 소멸

## • 수확감소보험금

지급사유	평년수확량 대비 수확감소비율이 자기부담비율을 초과하는 경우
보험금 산정	보험가입금액 × (피해율 - 자기부담비율) * *피해율 = $\frac{\text{평년수확량} - \text{수확량} - \text{미보상감수량}}{\text{평년수확량}}$

## 2020년도 주요사항

- 조사료용 벼는 경작불능 방식으로 보장  
생산비 : 200원/㎡(보장 종기 : 8월 31일)
- 경작불능 보험금 내용 약관 변경  
출수기 전까지 신청 및 산지폐기 의무 부과
- 보험요율 상한제 적용  
대상지역을 제외하고 가장 높은 지역 위험률과 상한제 대상지역 위험률의 평균값
- 전년도 무사고 할인 5% 폐지(전 품목 공통)
- 보험금에 경과비율 적용  
사고발생월에 따라 경과비율 적용  
보험금 : 보험가입금액 × 자기부담비율별 보장비율 × 경과비율  
※ 5월 : 80%, 6월 : 85%, 7월 : 90%, 8월 : 100%